

카드뉴스 [제23-17호]

산학협력단의 연구행정 정보를
쉽고! 편리하게! 전달해 드려요.



「강원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」 주요 개정사항 안내

▶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,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
「강원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」을 정비하고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• 시행일 : 2023. 9. 1.(금)부터

주요 개정내용

구분	주요내용
상위법 개정사항 반영	<p>해외 연구자 유치지원비</p> <p>가. 사용용도</p> <p>외국에 소재한 정부·기관·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,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</p> <p>나. 계상기준</p> <p>실소요경비를 계상한다.</p> <p>다. 집행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원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(단계)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것-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포함) 또는 산학협력단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- 본교 및 연구관리기관의 임용 기준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•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연구자 처우 개선	<p>야근(특근) 식대</p> <p>연구인력지원비 중 「야근(특근) 식대」 1인당 기준단가 인상</p> <p>(기존) 10,000원 → (개정) 15,000원</p>

문의 사항

Q “해외 연구자 유치지원비” 항목에서 외국인 연구자에게 인건비성으로 정기적인 연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?

A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비는 외국에 소재한 정부 기관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, 체재비 등으로 인건비처럼 정기적인 지급은 불가합니다.

Q “해외 연구자 유치지원비” 집행 시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.

A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증명서류를 필수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이에, 아래의 증명서류를 구비하시고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전체 연구개발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거주 확인 서류(출입국사실증명서 등)
-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와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참여 예정 과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이력서 등)

Q 당초 계상한 “해외 연구자 유치지원비”는 증액이 가능한가요?

A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비 총액의 증액은 지원기관 사전 승인사항으로 협약변경 후에 증액이 가능합니다. 협약변경은 연구개발기관(산학협력단)이 자격요건 증명서류 갖추고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므로, 자격요건 증명서류 및 협약변경신청서를 연구비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 「야근(특근)식대」 1인당 단가 인상은 언제부터 반영되나요?

A 야근식대의 단가는 2023.9.1.(금) 사용분부터 인상된 15,000원이 적용됩니다.

8월 31일 사용분까지는 기존 10,000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구통합관리시스템(rERP)은 2023.9.4.자에 인상된 단가로 일괄 반영 완료

문의처 :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집행담당자

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
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